

2022년 4분기 도시기반시설본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

「서울특별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」 제3조 제3항에 따라, 2022회계연도 4분기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드립니다

□ 관련근거

○ 지방재정법 제43조 (예비비)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재정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○ 서울특별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(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)

③ 시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그 사용내역을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□ 예비비 사용내역

(단위 : 천원)

부서명	예산과목		집행액	집행내역
	세부사업	통계목		
합 계			5,452,418	
도시철도설계부	9호선 3단계 923공구 공사대금 청구소송	배상금 등	3,900,270	○ 지 출 일: '22.12.27 ○ 지급대상: 대림산업 외 5개사 ○ 지급사유: 1심판결 패소
도시철도토목부	9호선 3단계 919공구 공사대금 청구소송	배상금 등	1,552,148	○ 지 출 일: '22.11.30 ○ 지급대상: 삼성물산 외 1개사 ○ 지급사유: 1심판결에서 일부 패소

□ 예비비 사용사유

- 『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23공구 공사대금 청구』 소송 1심

판결에 따른 판결금 지급

- 『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23공구 건설공사』와 관련하여 938정거장의 위치 및 규모 변경으로 발생한 추가 공사대금을 공사계약자인 원고(대림산업 외 5)가 귀책사유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하였고, 1심 판결에서 서울시가 패소함.
- 1심 판결에 따른 판결금 지급 의무에는 연 12%의 고율이자로, 시 재정부담의 최소화를 위해 시급한 집행이 필요하여 예비비를 활용하여 판결금 지급함.
- 『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19공구 공사대금(총괄간접비 등) 지급 청구』 소송 1심 판결에 따른 판결금 지급
 - 『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19공구 건설공사』의 총괄계약 36개월(당초 '09.12.31.~'15.12.29. 변경 '09.12.31.~'18.12.31.)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, 공사중 발생한 추가공사비와 감액된 공사비에 대하여 원고측(삼성물산 외 1개사) 귀책사유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판결에서 일부 패소함.
 - 1심 판결[원고 일부승소]에 따른 판결금 지급 의무에는 연 12%의 고율이자로, 시 재정부담의 최소화를 위해 시급한 집행이 필요하여 예비비를 활용하여 판결금 지급

- 붙임 1. 9호선 3단계 923공구 건설공사 공사대금 청구소송 개요 1부.
2. 9호선 3단계 919공구 건설공사 공사대금 청구소송 개요 1부. 끝.

9호선 3단계 923공구 건설공사 공사대금 청구소송

□ 공사개요

- 위 치 : 강동구 둔촌동 보훈병원 일원
- 사업기간 : '10. 9. 20. ~ '18. 12. 31.
- 총 연 장 : 1,782m(정거장 1개소)
- 총사업비 : 112,008백만원
- 계약업체 : 대림산업(주) 외 5

□ 사건개요

- 사건번호 :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89957(공사대금)
- 당 사 자
 - 원고 : 대림산업(주) 외 5
 - 피고 : 서울특별시
- 원고소가 : 200백만원
- 사건개요
 - 『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23공구 건설공사』 938정거장의 위치 및 규모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 청구

- ▶ 원고들이 9호선 3단계 923공구의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('10. 9.)되어 실시설계를 착수한 이후 정거장 출구 관련 지역주민의 집단민원 발생
- ▶ 우리 시는 입찰금액 범위 내에서 정거장 위치(규모) 이동을 반영하여 실시설계할 것을 지시('11. 3.), 실시설계 완료 및 공사 총괄계약 체결('11.10.)
- ▶ 이후, 원고측에서 정거장 위치(규모)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을 요청('12.11.)하였으나 우리 시에서는 일괄입찰공사의 특성 감안한 입찰금액 범위 내 설계 지시 및 계약시까지 이의제기 없었음을 이유로 거절

□ 추진경위

- '10. 4.16. : 공사 입찰공고
- '10. 9. 6. :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
- '10.12.13. : 보훈병원역 관련 민원 발생
 - 보훈병원역 출입구를 둔촌2동 방향으로 이동 설치 요청
- '11. 3.23. : 정거장 위치변경 평면계획(안) 통보(본부→대림)
 - 정거장 규모 및 출입구 위치변경은 입찰금액 범위 내 실시설계 지시
- '11.10.27. : 923공구 설계시공일괄입찰 총괄 공사계약
- '12.11.26. : 정거장 위치 및 규모변경 설계변경 요청(대림→본부)
- '12.12.27. : 938정거장 설계변경 요청 회신(본부→대림)
 - 공사비 증액 불가
- '17.11.29. : 정거장 위치 및 규모변경 설계변경 요청(대림→본부)
- '17.12.15. : 938정거장 설계변경 요청 회신(본부→대림)
 - 공사비 증액 불가
- '18.12.13. : 소송제기(대림)
- '19. 5. ~ '22. 8. : 변론(7회)
 - 외부 감정평가업체에서 감정평가(추가 공사비 산정) 실시
[최초 : 4,218백만원, 보완 : 10,770백만원, 재보완 : 3,608백만원]
- '22.12. 1. : 판결 선고(원고 승)
 - 서울시는 3,608백만원을 원고에게 지급(지연이자 12%)

<판결요지>

-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은 무효
 - 공사계약특수조건(입찰공고에 포함)에 설계변경 요청기한, 분쟁해결 방법 등의 내용이 계약상대자의 재판청구권을 배제하는 등 부당함
- 실시설계중 발주처의 요구 내용 반영이므로 설계변경은 적정함

- '22.12.22. : 피고(서울시) 항소
- '22.12.27. : 판결금 가지급(예비비) - 이자포함 39억

□ 소송결과

○ 1심 선고 결과(원고 승소)

□ 소송개요

- 사 건 명 : 공사대금 청구의 소
- 사건번호 : 2018가합589957(공사대금)
- 당 사 자
 - 원고 : 대림산업(주) 외 5
 - 피고 : 서울특별시
- 원고소가 : 200백만원
- 청구취지
 - 『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23공구 건설공사』 938정거장의 위치 및 규모 변경으로 발생한 추가 공사대금을 공사계약자인 원고(대림산업 외 5)가 귀책 사유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

□ 판결요지(1심)

-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은 무효
 - 공사계약특수조건(입찰공고에 포함)에 설계변경 요청기한, 분쟁해결 방법 등의 내용이 계약상대자의 재판청구권을 배제하는 등 부당함
- 실시설계 중 발주처의 요구내용 반영이므로 설계변경은 적정함

□ 판결금 가지급 현황

(단위 : 원)

합 계	원 금	이 자			비 고
		계	연 15%	연 12%	
3,900,269,312	3,608,513,800	291,755,512	12,082,197	279,673,315	이자(12%) 1,186,310월일
297,890,559	200,000,100	97,890,459	12,082,197	85,808,262	('19.1.5 ~ '19.5.31) ('19.6.1 ~ '22.12.27)
3,602,378,753	3,408,513,700	193,865,053	-	193,865,053	('22.7.8 ~ '22.12.27)

※ 지급사유 : 판결에는 가집행 가능 조건으로 연 12%의 고율이자 발생함에 따라 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활용하여 판결금 지급

9호선 3단계 919공구 건설공사 공사대금(총괄간접비 등) 청구소송

□ 공사개요

- 위 치: 송파구 삼전동(구 잠실병원) ~ 8호선 석촌역
- 사업기간: '09.12.31. ~ '18.12.31.
- 총 연 장: 1.56km(본선 1.23km, 정거장 2개소 0.33km)
- 계약금액: 214,982백만원
- 계약업체: 삼성물산(주) 54%, 쌍용건설(주) 40%, 매일종합건설(주) 6%

□ 사건개요

- 사건번호: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 585747(공사대금 청구의 소)
- 당 사 자: 원고 삼성물산(주) 외 1, 피고 서울특별시
- 원고소가: 36,303백만원(간접비 21,685, 추가공사비 12,105, 감액비 2,513)
- 사건개요
 - 『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19공구 건설공사』 총괄계약 36개월(당초 '09.12.31.~'15.12.29. 변경 '09.12.31.~'18.12.31.)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, 공사중 발생한 추가공사비와 감액된 공사비에 대하여 원고측 귀책사유가 없다며 소송제기

□ 추진경위

- '09.12.30.: 도급계약 체결
- '09.12.~ '18. 12.: 1차 ~ 11차 공사 시행
- '19.11.19.: 소장 접수
- '20.05.14.: 1차 변론
- '22.09.29.: 4차 변론
- '22.11.10.: 1심 판결선고(서울시 승소: 96.4%)
- '22.11.30.: 판결금 지급(1,552,148천원)
- '22.12.03.: 판결 종료 확정

소송결과

- 1심 선고 결과(서울시 승소: 96.4%)

소송개요

- 사 건 명 : 공사대금 청구의 소
- 사건번호 : 2019가합585747
- 당 사 자
 - 원고 : 삼성물산 외 1
 - 피고 : 서울특별시
- 원고소가 : 36,303백만원(간접비 21,685, 추가공사비 12,105, 감액비 2,513)
- 청구취지
 - 『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19공구 건설공사』 총괄계약 36개월(당초 '09.12.31.~'15.12.29. 변경 '09.12.31.~'18.12.31.)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, 공사 중 발생한 추가공사비와 감액된 공사비에 대하여 원고측 귀책사유가 없다며 소송제기

판결요지(1심)

- 공사중 발생한 추가공사비 중 건축 안내사인, 폭염에 따른 작업중지, 선로 감시원 투입비용 1,087,220,305원과 감액된 공사비의 동공발생 원인조사 중 2차 조사위원회 비용 207,000,000원을 지급
 - 발주청의 요청 또는 지시에 따라 안내사인 시공 및 선로감시원이 투입된 사항으로 설계변경 내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 조정사유에 해당
 - 폭염경보 발효시 임금을 보전하여 주겠다는 문서를 발송하였고, 폭염은 원고의 책임없는 사유 내지 불가항력으로 계약금액 조정사유에 해당
 - 원인조사 비용 중 2차 조사위원회 비용(207,000,000원)은 조사 결과 동공 발생의 주된 책임이 원고들에게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어, 사고와 객관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비용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.

□ 판결금 지급현황

- 지급금액: 1,552,147,865원(원금1,294,220,305원, 이자 257,927,560원)

(단위: 원)

구 분		삼성물산 (원금: 776,532,183)	쌍용건설 (원금: 517,688,122)	합 계 (원금: 1,294,220,305)
1심	원 금	124,200,000	82,800,000	207,000,000
	이 자(6%) (‘19.08.08. ~ ‘22.11.10.)	24,295,561	16,197,041	40,492,602
	이 자(12%) (‘22.11.11. ~ ‘22.11.30.)	816,657	544,438	1,361,095
	원 금	652,332,183	434,888,122	1,087,220,305
	이 자(6%) (‘19.08.29. ~ ‘22.11.10.)	125,355,011	83,570,007	208,925,018
	이 자(12%) (‘22.11.11. ~ ‘22.11.30.)	4,289,307	2,859,538	7,148,845
	계(A)	931,288,719	620,859,146	1,552,147,865

※ 지급사유: 원심판결에는 연12%의 고율이자 발생에 대한 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활용하여 판결금 지급